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2

발의연월일: 2020. 6. 25.

발 의 자:윤한홍·한무경·강대식

이명수・홍준표・곽상도

태영호 · 김영식 · 이만희

권성동・강기윤・추경호

김기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 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 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제8항, 제8조제4항·제5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34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변경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허가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제10조제5항에"를 "제10조제7항에"로 한다. 제71조제2호 중 "제5조제8항에"를 "제5조제10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제8항, 제8조제4항·제5항, 제9조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

항·제5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 ⑥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u>⑧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항에</u>		
	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		
	로 본다.		
<u>⑦</u> ・ <u>⑧</u> (생 략)	<u>⑨</u> ・ <u>⑩</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신 설>

④ (생략)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 업자의 등록)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 로 본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업자의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 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⑥ -----제5항까지에서--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 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 로 본다.

-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생 략)

<신 설>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 ③ (생 략)

<신 설>

<u>또는</u>	재연] 장된	경우에	는	해당
처리기	기간을	을 말한	한다)이	끝님	ナ 날
의	구음	날에	신고를	수	·리한
<u> 것으</u> :	로 본	<u>다.</u>			
$\overline{7}$			訓(なしか)	کا کا	[גן

<u>7</u>	<u>체</u> 6	항까지에서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생략)

제19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제19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의 신고) ①・② (생 략) 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제25조(공급규정) ① (생 략)

<신 설>

⑤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 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9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공급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7 <신 설>

② (생략)

제34조(안전관리자)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생략)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제45조(상세기준) ① ------안전관리법 | 제33조의2에 따 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 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4조(안전관리자)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 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 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수 있다.

- 1. ~ 3. (생략)
- 4. <u>제10조제5항에</u>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5. ~ 10. (생략)
- ② ~ ⑤ (생 략)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u>제5조제8항에</u> 따른 명령을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3. ~ 8.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0조제7항에</u>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1. (현행과 같음)
2. <u>제5조제10항에</u>
3. ~ 8. (현행과 같음)